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36 발의연월일: 2024. 7. 1.

발 의 자:양부남・박지원・정진욱

정준호 • 이재관 • 안규백

전현희 · 강준현 · 서삼석

민형배 • 박해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 임용을 시험성적, 근무성적, 경력평정,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도록 하되, 장애인, 이공계 전공자,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 및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임용·승진·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5 조).

법률 제 호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 단서 중 "저소득층"을 "저소득층, 다자녀양육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임용의 기준) 공무원의 임	제25조(임용의 기준)
용은 시험성적, 근무성적, 경력	
평정, 그 밖의 능력의 실증(實	
證)에 따라 한다. 다만, 지방자	
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	
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	
에 따라 장애인, 이공계 전공	
자, <u>저소득층</u> 등에 대한 임용·	<u>저소득층, 다자녀양육자</u>
승진·전보 등 인사관리상의	
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	
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	
실시할 수 있다.	